

#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870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. 7. 3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7. 5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4. 7. 14

산업건설위원회 상정·의결

### 2. 개정이유

-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범위와 부설주차장을 시설할 수 없을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게 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의 면제기준을 정하는 등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엽제 휴유의증환자 소유 승용차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.

### 3. 주요골자

가. 고엽제 휴유의증환자 소유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료 50%감면  
(안 제4조제3호 다목)

나.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기준 직선거리 200m(안 제13조)

다.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부여시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산정기준  
(안 제14조의 2 제1항)

라.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(안 제14조의 2 제2항)

마.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 
(안 제14조의 2 제3항)

바. 주차장법령에 의한 과태료 부과사항으로 조례내용 삭제(안 제18조의 2)

사.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(안 별표5)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내 건축물의 신·증축 및 개축, 용도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주차수요의 증가를 수용하여 시내 주차난을 해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,
-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 제6호 다목을 신설하여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자가운전 차량의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하여 국가 유공자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,

안 제13조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범위를 정하였으며, [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(령제7조 제2항 제2호)안에서 조례제정]

안 제14조의 2 제1항과 제2항에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때에는 당해 노외주차장의 총 공사비 중 무상제공되는 주차면수의 설치비용을 납부하게 하고(무상제공 기한 : 20년) 노외주차장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건축물 부지의 의무설치 주차면수의 설치비용과 그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납부토록 하였으며,

안 제14조의 2 제3항에서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였으며,

안 제18조의 2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이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며,

본 조례의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2급지 노외주차장에서 1일 주차사용료를 2,500원에서 4,00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으며,

별표 5에서 조례 제12조 제2항과 관련하여 제2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제5호로 이관하고,

제4호 단독주택의 설치기준을 상업지역, 주거지역외의 지역과 구분하여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다가구주택은 5호 공동주택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.

동 개정조례안은 2003. 12. 15과 2004. 5. 18일 2차례 걸쳐 입법예고 하였으며, 입법예고 결과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나 의견이 없었으며,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동법 시행에 따른 법률적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고 검토보고 하였음.

## 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우리군내 고엽제 환자가 얼마나 됩니까?
- 답 : 고엽제 환자 49명 고엽제의증 환자 33명 계 82명입니다.
- 문 : 도로변에 전인주차표시를 어떻게 했습니까?  
개인상점앞에 전인표시가 보입니다.  
도로가 굽어지는 곡각지점에 표시해야 차량의 호흡이 원활하지 않겠습니까?
- 답 : 전인표시를 구역별로 정하여 주었으나 시공업자가 개인상점앞 등에 표시한 것입니다. 앞으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겠습니다.
- 문 : 관람장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?  
관람장 설치자도 100인당 1대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까?
- 답 : 예, 그렇게 해야 합니다.
- 문 : 고성읍내 주차할 곳이 없어 애로가 많습니다.  
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답 : 전인조례나 주차장조례에 의거 잘 하겠습니다.

## 6. 토 론 : 없음

## 7. 심사결과

- 2004. 7. 1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